행복한 도민
신뢰받는 의회

제351회 임시회
2016. 10. 14.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북 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충북 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464호

2016. 10. 14.(금)
정 책 복 지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6년 9월 27일

○ 회부일자 : 2016년 9월 28일

다. 상정일자 : 2016년 10월 7일

○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**원안가결**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변혜정 여성정책관)

가. 제안이유

○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**“충북여성재단”**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

나. 주요내용

○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**(설립목적)** 여성의 경쟁력 향상,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
- **(운영재원)** 도 및 개인·기관·단체 등의 출연금, 수익금 등

○ 재단의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여성·가족·다문화·청소년 관련 정책연구·개발,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·운영 사업 등

○ 임원 및 이사회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7조)
- 이사장, 대표이사, 이사회, 감사 및 사무처 등 설치·운영

○ 재단운영 및 제재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14조)
- 사무범위, 의결절차 및 행위제한 등 책임범위 규정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가.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검토

○ 충북여성재단은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충북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와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(‘16. 4. 29) 및 행정자치부 협의(‘16. 7. 12)를 거쳐 2017년 3월 설립을 예정으로 추진 중임.

○ 타 지역의 경우 대전, 세종, 충북, 경남을 제외한 13개 시 · 도에서 여성재단을 설립 · 운영 중에 있음.

○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(2011. 9.15)과「양성평등기본법」(2014. 5. 28) 의 제정 · 시행과 여권 신장 및 성 주류화의 확대가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, 여성능력개발, 문화활동 및 권익증진, 여성 관련 연구 · 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성재단의 설립은 필요하며,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○ 안 제4조의 재단 사업 내용과 관련해, 설립 예정인 충북여성재단의 조직 구성을 보면, 사무처장 산하에 정책연구팀(5명), 교육 운영팀(6명)을 두도록 계획되어 있음.

- 즉, 안 제4조에 명시된 재단 사업 중 정책연구・개발 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들을 교육 운영팀에서 담당해야 하는 데, 다소 업무가 과중될 여지가 있음. 따라서, 교육 운영팀의 업무 분장 및 인력 배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※ 조직 구성안 및 교육 운영팀 담당 사업 (안 제4조)

-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-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
-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
- 여성인권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업
-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
-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·협력 사업
- 여성・가족정책 관련 교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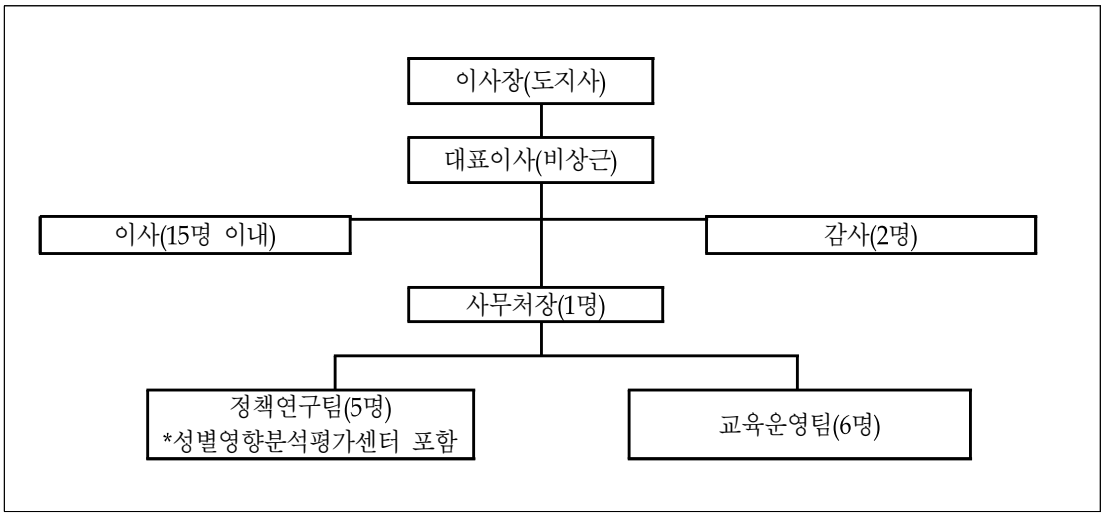

❍ 안 제5조는 「민법」제43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.

- 특히, 정관 변경과 관련해「민법」제45조 제1항에는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안 제5조제1항제9호에 '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'을 규정하였음.

  ※「민법」제45조(재단법인의 정관변경)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❍ 부칙 제2조에는 기존 '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'에서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,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 재단 설립 시 재단 소속으로의 전환을 위한 채용특례 조항을 두고 있음.

- 직원들의 경우, 전원 고용승계 차원에서 본 조항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 다만, 재단 소속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일부는 공무원 신분이 종결되고, 급여 등 제반 근로 조건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바, 해당 인원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요구되며, 가능한 근로 조건이 유지되어, 전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.

다. 종합 의견

❍ 본 조례안은 여권 신장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및 교육, 문화 등 제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북여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- 이미 13개 시・도에서 재단을 설립・운영 중에 있고, 충북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및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친 바,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되며,
- 검토 결과, 조례안에 규정된 조항들 또한 내용 및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본 조례안에는 재단 대표이사의 상근, 비상근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, 「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」을 보면, 조직구성에 있어, 대표이사를 '비상근'으로 하고 있는 바,

- 현재 여성재단을 운영 중인 타 시·도의 경우, 13개 지역 모두 대표이사를 '상근'으로 운영 중인데, 충북의 경우 '비상근'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○ 또한, 재단 설립 시, 기존 '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'에서 기 채용했던 임기제 공무원,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소속의 전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 략"

5. 토 론 요 지 : "생 략"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 음"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북 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」 1부.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북 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, 충청북도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) 충북여성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3조(재산 및 운영경비)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출연금
2. 개인·기관·단체 등의 출연금
3. 제9조에 따른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여성·가족·다문화·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·개발 사업
2.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3.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
4.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
5. 여성인권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업
6.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
7.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·협력 사업
8. 여성·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

9.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
5.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7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
8. 사업에 관한 사항
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0. 해산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임원 등)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, 임원의 정수,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7조(사무처의 설치)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와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제9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하고,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·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1조(사무의 위탁) 도지사는 여성·가족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시설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규정)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.

제14조(재단에 대한 제재)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,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

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예산을 사용하였을 때
2.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
3.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채용특례) ① 재단의 설립으로 인하여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가 폐지되거나 기능이 조정되는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직원 (임기제공무원, 무기계약직근로자 등)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근로기간 및 처우 등 근로 조건에 관하여는 재단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민법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제4조(설립허가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그 설립을 허가한다.

1.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
2.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,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
3.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,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40조(여성가족부 소관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(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, 정관변경 허가, 해산신고의 수리, 그 밖의 지도·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.

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명　　칭 : 충북여성재단

○ 주요사업 : 여성정책 연구·정책개발,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

○ 추진근거 :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충북여성재단 설립·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 제비용

3. 관련조문

○ 안 제8조(재정지원 등)

-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‘16년도 충북여성발전센터 예산 및 충북연구원 타당성 검토(사업수지 예상)결과를 토대로 비용 추계

나. 추계 결과 :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총 58억원 정도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 : 충북여성재단 운영(‘17~’21)

○ 5,798백만원(국고보조금 402, 도비보조금 5,046, 사업수입 350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여성정책관 변혜정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'17년)	2차년도 ('18년)	3차년도 ('19년)	4차년도 ('20년)	5차년도 ('21년)	계
세 입		**1,261,000**	**1,090,000**	**1,119,000**	**1,149,000**	**1,179,000**	**5,798,000**
국 비		76,000	78,000	80,000	83,000	85,000	402,000
도 비		1,135,000	952,000	969,000	986,000	1,004,000	5,046,000
기타(사업수입)		50,000	60,000	70,000	80,000	90,000	350,000
세 출		**1,161,000**	**1,090,000**	**1,119,000**	**1,149,000**	**1,179,000**	**5,698,000**
시설비및자산취득비		100,000	-	-	-	-	100,000
인 건 비		469,000	481,000	496,000	510,000	526,000	2,482,000
일반운영비		106,000	88,000	88,000	91,000	91,000	464,000
사업비 등		486,000	521,000	535,000	548,000	562,000	2,652,000
재원 조달		**1,261,000**	**1,090,000**	**1,119,000**	**1,149,000**	**1,179,000**	**5,798,000**
의존 재원	소 계	76,000	78,000	80,000	83,000	85,000	402,000
	보조금	76,000	78,000	80,000	83,000	85,000	402,000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1,135,000	952,000	969,000	986,000	1,004,000	5,046,000
	지방세	1,135,000	952,000	969,000	986,000	1,004,000	5,046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 △△특별회계 △△특별회계							
구·군비							
기 타 (사업수입 등)		50,000	60,000	70,000	80,000	90,000	350,000

※ 국고보조금 :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비, 기타 : 공모 및 연구용역 수입

※ '17년도 세출예산 : 100백만원(기본재산 적립금, 최초 출연)